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5. 22.(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19-25-108)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으로 ‘법령 위반여부’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올해 3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고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등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위반여부 반영 법령의 구체화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의무 심사항목으로 ‘법령 위반여부’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평가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취지 및 방송의 공적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법령의 위반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나> 조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 사유는 제16조에 유효기간 외에 재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7항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16조의 명칭을 현행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에서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 입법예고안 등 변경사항입니다. 법제처 사전 검토 의견,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중재법은 법령위반에 대한 해석상 논란 발생이 가능하다는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고시 위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제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사항은 마목과 바목의 사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적책임을 고려해서 위반여부를 점검할 법령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변경된 보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외에 재허가 절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재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등’으로 표현한 것도 역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위반이 되면 감점이 얼마나 됩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4점에서 8점정도 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한 감점이 이루어진 사항이 어떤 법령이 위반될 때 감점이 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어떤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공지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에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법을 명확하게 준수 하도록 하는 강제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또 의견이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의견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25-109)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수도권 UHD 3개 방송사업자, DTV·라디오 33개 방송사업자 등 총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경과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지난 5월 10일 의결하였습니다.

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허가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6개사 141개 방송국이며, 세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나>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합니다. 다음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사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다음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지상파 DTV·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일괄 실시하고, UHD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명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님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결정하고,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라>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합니다. 사업자별 심사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허가 여부 등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합니다. 이하 사항은 이전에 의결하신 사전기본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5>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5월 재허가 신청공고를 통해 올해 1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에 재허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2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중요성을 강조해서 별도로 50점이 반영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방송평가 쪽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거 3년치의 실적을 재허가할 때 방송평가는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치를 반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1년치를 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국악방송의 재허가는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다른 방송국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국악방송의 다른 방송국이라는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해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허가 심사 때 지상파 UH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2017년 5월 수도권 지역부터 개시가 되었고, '17년 연말에 5대 광역시와 평창, 강릉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1년까지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직 전국화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재허가 심사를 하게 되어서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에서 지상파 UHD 추진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UHD 방송 추진 현황을 리뷰 하였고, UHD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의무편성 비율, UHD 인프라 및 콘텐츠 투자계획, 콘텐츠의 제작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수신환경 개선, 그리고 시청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맞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앞으로 TF의 논의 결과가 향후 재허가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TF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KBS에 개별 부가된 EBS의 UHD 채널 송신 지원 방안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합의계획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청취한 뒤에 그 이행을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방송사 재허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라디오방송 광고매출이 급감하는 등 제반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사별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편성 및 경영전략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OBS 재허가 심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OBS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연속해서 6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아서 재허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문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한 뒤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재허가 심사 때 OBS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BS가 재허가 조건 관리를 잘해 왔으면 매우 좋겠지만 만약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나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또 다시 650점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에 '재허가 거부'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 재허가 세부 심사계획에 재난방송 항목이 추가로 50점 신설된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다른 배점을 조정해서 50점이라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만 추가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원래 기존 계획에도 50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 여부의 내용이 세부 심사계획에서 조금 바뀌는 것이 기존에는 재난방송을 실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만 따져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감점했는데 이번 재난방송 개선대책 국무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난 방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제출받아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으로 질적인 평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1,000점에서 1,050점으로 늘어난 것이 이것 때문에 50점이 가산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정식 배점이 50점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심사에 한해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재난방송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적절한 배점으로 배당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심사 평가방안에 보면 평가방식에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해서 비계량평가에는 수·우·미·양·가 5개 척도로 등급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비계량평가의 등급은 이미 기존의 심사 방식과 동일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것은 아니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다른 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늘 비계량평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업자들이 비계량평가의 속성상 자의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배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아주 구체화시켜서 비계량평가를 하더라도 그런 자의적인 또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심사사항에 배점의 50% 소위 과락이 되는 경우에 '재허가 거부'로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이런 부분인데 공익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심사항목은 동일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난번부터 있었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 기회에 다시 세부 계획에 적시가 되었으니까 방송사들이 이런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노력과 의지를 다지는 기대를 다시 한 번 해 보면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도 동일한 사안인데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방송정책국장이시기 때문에 지상파, 종편, DMB 이런 사업자 심사를 할 때 조금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사회가 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심사과정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과 하고, 또 심사절차를 다 공개합니다만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나 사업자 내부자의 폭로 등으로 해서 심사과정에서 걸려져야 할 것들이 걸리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최초 심사 시점에서 지분 배정하는 문제나 최초 자본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 위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조사권한이 있는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간 그리고 주주 간 이런 은밀한 거래에 대해 조사권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 서류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방통위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로 신규 허가나 승인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허가·재승인 때 보면 종편도 그렇지만 지역민방, 중소매체의 콘텐츠 투자계획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문제는 늘 시뻐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UHD, 이것 몰랐습니까? 그때 제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왜 지상파로 UHD를 직접 하시려고 하느냐고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시장이 어렵게 될 것을 그때 몰랐습니까? 다 알고 한 것입니다. 광고정책 탓하지만 실제로 광고 매출이 빠지는 것은 지금 특정 종편들 같은 경우 광고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 방송도 그렇고요. 그것이 꼭 중간광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만한 조직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낮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사 과정에서 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살펴보시고, 행정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비호할 필요가 없지요.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방통위가 다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조사권한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각 매체별로 재허가·재승인 세부 심사계획을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 다음부터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심사 이후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서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허가·재승인이라는 방통위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허가 계획에 따른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

방침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사업자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상 의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재허가 사업계획서로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미리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심사위원 구성도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재허가 계획 자체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아까 사업자들에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픈 지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상파들에 대해서건 종편에 대해서건 아니면 취약한 매체건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는 지금의 경영진들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업권은 회사의 대표로서 받은 것이고 그 회사가 받은 것입니다. 재허가·재승인도 그런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적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한다면 제가 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심사 속기록을 한번 꼭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까 표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방송 관련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방송사의 허가과 재허가일 텐데 지상파방송은 대부분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사위원들의 결격사유가 없어야겠지요. 결격사유를 철저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HD의 경우에는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UHD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4K로 가느냐, 우리는 4K로 하고 있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8K로 가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8K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훨씬 더 질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비도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15%로 되어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의무편성비율이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만 맞추면 기술적 능력은 조금 여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K로 갈지, 8K로 가야 할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더구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8K를 만들어서 4K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4K로 만들어도 큰 탈은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 장비와 관련하여 4K 장비가 불필요하게 되고 8K를 다시 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감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UHD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서 면밀히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고삼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현재의 방송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노력이 상당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없이 적당히 하루하루 넘기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재허가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깊이 인식시키고 방송사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허가 정책을 통해 방송사들이 생존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재허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심사위원회도 엄격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25-110)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다>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광주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의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 대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개 지상파DMB 방송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유사하므로 심사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짚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도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임무는 앞서 보고드린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계획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허가 여부 등 결정사항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추진일정(안)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6월 말까지 재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허가 의결과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 지상파는 심사위원이 11명이고, DMB는 사업자 숫자가 적어서 9명으로 구성한 것입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상파사업자는 30개가 넘는 사업자를 심사해야 하고, 이번에 DMB 심사 대상자는 5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들은 다 위촉하고 9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지상파DMB가 당초 도입되었던 정책취지와는 달리 뉴미디어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상파TV의 이동 재송신 매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보고된 재허가 대상사업자의 작년 기준 평균매출액을 보면 약 7,600만원입니다. 결국 DMB 사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지상파DMB는 재난방송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방송매체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지상파DMB의 수신장치는 80.4%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장소로 이동 중인 교통수단이나 실외장소가 64%에 달합니다. 특히 6개월 후에도 지상파DMB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82%나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매체라 여겨집니다.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TV의 이동수신매체인 지상파DMB 재허가 심사 역시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방송의 공공성 실현 관점에서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재허가 심사 때 3가지 정도를 유념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DMB 전용 프로그램 제작과 확보계획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 방송매체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 내 지상파DMB 이용률은 7.5%로 저조합니다. 이러한 이용률을 높이려면 이동매체에 걸맞은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지상파 DMB 방송을 이용하기 위한 수신환경에 대해서 약 70%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상파 DMB의 전국 평균 커버리지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시청에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지상파TV와 라디오가 방송사별 허가유효기간이 일치하여 함께 심사하고 있지만 DMB는 허가기간이 다릅니다. DTV, 라디오, DMB가 동일법인이 경영하고 있는데도 DMB 사업에 대해서 별도 회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이나 손익 산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TV 재허가 심사 때 지상파DMB를 포함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도입된 고화질 DMB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역방송사가 고화질 채널 도입에 각사별로 약 5.5억원이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만원 매출로서는 투자력이 없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DTV나 라디오·DMB를 연계해서 심사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DMB 활성화를 위해서 DTV와 허가기간을 맞춰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주 좋은 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상파 DTV 심사할 때 DMB도 함께 유효기간을 같이 줘서 같이 심사를 받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사업자별로 허가 유효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이번이 맞춰지는 첫 번째 케이스나 됩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년 내지는 4년 단위로 DMB는 허가를 받고 있고, 지상파방송사업자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심사기간을 맞추려면 모든 사업자가 다 동일하게 가지는 않고 언젠가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을 맞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예를 들면 어느 매체를 단축시킨다거나 또는 늘린다거나 해서 그것을 맞춰 나가기로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DTV는 이번에 재허가를 처음 받는 것이고 지상파DMB는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 등 모든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다 살펴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9-25-11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라>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관련경과는 2013년부터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 앱마켓을 시범평가하고 포털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앱마켓 4개사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목적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신속한 이용자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평가 운영방향으로는 이용자 규모가 큰 부가통신 서비스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신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평가 대상사업자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 서비스 분야, 총 32개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수 또는 민원 현황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3개사, 알뜰폰 7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등 총 22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대상 사업자 중 알뜰폰의 이지모바일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와 민원현황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작년에 포털 4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포털에서 전체 부가통신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서 이용자수 기준으로 상위 6개 사업자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최초로 평가대상으로 추가된 3개 서비스(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는 최초 평가임을 감안하여 시범평가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수 및 사업자 서비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서비스 중 앱마켓은 인앱 결제 등 다른 통신서비스의 민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4개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대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평가기간을 전년 1년간으로 조정 예정임에 따라 올해는 한시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업무 관리 체계,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이용 및 불만처리 실적 등 5개 분야 총 8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붙임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CS책임자 면담, VOC 시스템 확인 등 현장평가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간소화해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바로 실시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사 CS책임자의 면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ARS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핑 등 이용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평가사항으로는 전년도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 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개선 정도와 작년에 마련한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평가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 및 고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선정기준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는 각 사업자별 평가결과는 등급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등급이나 점수 공개 여부는 평가 결과 의결 시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최초 평가하고자 하는 시범평가 대상 3개 사업자의 경우는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고 개별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인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 감경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시한 사항 중 우수사례라든지 평가위원회에서 건의한 미흡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부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올 9월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에 평가대상 6개 분야 총 32개 사업자 가운데 특히 올해 부가통신사업자 중 페이스북이 새로 추가되었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포털서비스 외에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세 곳이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해외사업자 본사의 CS책임자의 화상 면담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평가방법 가운데 온라인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작년에 구글과 애플이 자료제출을 상당히 미흡하게 하거나 하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자료 말고 이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평가기준들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평가지표 개선의 하나로 이용자 체감형 평가지표를 발굴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만약에 이용약관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만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게시되어 있는지를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몇 단계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출력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용이 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작업해 보고 액세스 해 봐서 나온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큼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산정기간이 줄어들는데 이러한 기간 단축으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나 혹시 객관성 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평가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연도를 걸쳐 있는 부분들이,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그런 점들은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위원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시적으로 6개월로 맞추기로 했는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정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크게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모든 대상사업자들이 같은 기간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법정평가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서 고객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평가의 경우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시범평가를 한다는데 시범평가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평가자료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다 제출을 받고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평가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속 평가를 받았던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는 준비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는 실시하되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부터 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포털이나 앱마켓 같은 경우에도 최초 평가할 때는 시범평가 형식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에 새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새로 평가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용자 수는 수천만 명인데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자료제출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시범평가이긴 하지만 최초로 우리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평가를 새로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잘 준비해서 온라인 모니터링 평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사 CS책임자 화상면담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공문행위를 통해 꼭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그래서 글로벌 사업자들 같은 경우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 사내변호사들이나 실제 CS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책임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면담을 하거나 평가에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든 아니면 아시아총괄이든 본사에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얼마나 협조를 얻어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간에는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소문도 불안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그런 차단설의 일환으로 혹시나 유튜브 이용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인가 하는 의심도 시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 차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잘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에 설명할 때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범평가를 앱마켓도 해 보고 포털도 해서 본 평가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1년 뒤에는 본 평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조가 미흡하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체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6개월 단위가 되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6개월만 하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넘어간다면서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왜 그렇게 됐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가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통계자료나 업체에서 자료관리를 하는 것이 연간단위로 관리하는 것들이 더 용이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것도 연도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연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위해 올해는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6개월로 기간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려던 사안들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대체로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이다, 무엇이다 해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 평가업무에 협조적인 국내사업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내역을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연례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한의 한계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책무 차원에서 매년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백서를 냅니다. 왜 국내에서는 안 됩니까?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 평가업무 등 정부가 주관하는 것들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했고, 또 개인정보 보호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 평가시스템에도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참여

하도록 해야겠지만 현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자들에게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 지난번처럼 유튜브 차단설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도 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보다 확실하게 저희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평가 자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 하되, 말씀하신 백서 문제는 저희 이용자 평가 자체를 백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평가위원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자체가 미국처럼 백서를 내게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평가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이용자의 권리, 편익,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 이런 것일 텐데, 좋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되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편익을 보장한다거나, 피해를 예방한다거나, 또 어떤 선택권을 보장한다거나 등등의 보호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고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또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로 잘 선정해 주시고 계획대로 엄격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이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 근거’ 신설입니다. 법 제7조제2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유입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재허가 결과에 따른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동 사안은 ‘17년도에 종편PP 미디어랩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신설입니다. 법제6조제5항 신설 및 제10조제3항 개정입니다. 신설 사유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미디어랩 허가·재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과 6월 중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치고 이후 위원회 의결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 근거 마련을 위한 오늘 보고안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한 대로 이 안건은 '17년 말에 MBN 미디어랩 재허가 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당시 심사의견서를 보니까 현행 미디어랩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만 규정하고 있어서 허가조건 이행사항 미흡 및 중대한 법령위반 시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불이익 방법이 없으므로 방송사업자와 같이 허가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랩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의였는데도 법률 개정작업이 즉시 착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큼니다. 하지만 사무처에서 올해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있을 예정인 SBS 미디어랩 재허가 심사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와 광고대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신설한 것은 아주 중요한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방송광고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랩사의 불공정 행위들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디어랩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원안대로 입법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어쨌든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광고 관련 제도개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결합판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외에도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1분 폐회 】